

환경관리

실무상담

(다섯번째)



차승환
〈원주환경지청 지도과장〉

22. 방지사설 설치면제승인을 받은 배출 시설의 관리

환경보전법 제15조의 2 제1항단서규정에 의하면 방지사설 설치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그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될때 방지사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며 면제받은 후 배출시설 관리에 있어 일선에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가. 배출시설 설치완료 신고, 배출시설의 검사 및 정상가동에 대하여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사설을 설치한 경우와 동일하게 허가기관에 배출시설 설치완료 신고와 검사신청을 하여 정상가동지시를 받은 후 정상가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출시설 설치완료 신고및 검사신청에 의거 적합판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자가측정 실시여부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환경청장이 인정하여 방지사설 설치의무 면제를 받아 가동중인 배출시설이라면 자가측정이 생략된다.

다. 측정시설의 설치및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경우에 대하여

방지사설 설치의무 면제를 받은 배출시설이라도 동시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측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도, 점검기관에서 동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도 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때는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며 동 배출시설 및 공정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로 확인된때에는 방지사설 설치의무 면제승인이 취소되고 방지사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배출시설 검사신청시 대기분야 오염도 검사항목.

환경보전법 제16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설치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지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 설치완료 신고 및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대기배출시설별 주요오염물질 검사항목 기준은 다음표와 같은바 배출시설 검사신청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검사수수료는 88.2월호 19쪽 참조).

대기배출시설별 주요오염물질 측정항목

○ : 주요 측정대상 오염물질 항목
 ◎ : 배출농도가 높을 우려가 있는 항목

오염물질 시 설	분	진	매	연	황산화물	일 산 화 탄 소	질 소 산 화 물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기타 유해물질	악취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		○	(용선로)	◎ (비철금속 제련)	○	○	◎ (알루미늄제련)		(중금속류) ○	○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 (불산사용시)	○ (염산사용시)		◎
화학제품 제조·정제시설	◎ (소성로)				(황산제조, 유황합유 광물소성) ◎			(불산제조나 반응, 인광석소성이나 반응) ◎	(염산제조나 반응) ○		◎
석유정제시설, 석유화학제품의 제조·가공시설			○		○					(탄화수소류) ○	◎
시멘트 또는 석회의 제조·저장·가공시설	◎					○	○				
합성탄제조시설, 동 원료의 저장시설	◎		○			○				(포름알데히드) ○	
석탄·석탄제품 제조시설 및 동 원료의 저장 시설	◎		(코우크스 제조) ○								
가죽, 아교 및 제라틴 제조시설			○								◎
요업제품 제조시설 또는 유리의 제조·부식 시설	◎		○		○		○	◎			
열 공 급 시 설	배출가스량 : 500 Sm ³ /hr. 이하의 중유전용보일러	○	○		○						
	기 타	◎	○		○ (고체연료연소) ○	○					
소각시설	◎		○		○ (폐유소각)	○		○		(카드뮴, 포름알데히드) ○	◎
단백질사료·제조시설			○								◎
분쇄, 제분, 제재, 도장, 연마, 탈사 및 선별시설	◎										

- 주) 1. 각 시설 공히 특정유해물질 배출원인이 있을 시는 해당 특정유해물질 측정
 2.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거 항에 대한 배출시설에 있어서는 악취 또는 특정유해물질을 측정
 3. 대상항목은 시설별이고 업소별은 아니므로, 업소에 복합시설이 있을 경우는 각 시설별로 적용시켜야 함.
 4. 악취측정은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대상 시설외에도 악취의 발생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측정
 5. 대상 항목에 속하지 않더라도 제조공정상 배출 가능한 오염물질에 대하여 추가 측정

24. 배출부과금 위반회수별 부과계수

가. 최초위반시의 위반회수적용 및 위반회수별 부과계수 산정방법

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87. 6. 3일부터 적하는 위반회수별 부과계수적용은 위반이 전혀없는 경우 $\frac{100}{100}$ 으로 하고 처음 위반하였을 때 $\frac{105}{100}$ 를 적용하며, 이 위반이 없는 경우라 함은 위반의 범주에 해당하는 령을 받아본 일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출부과금 부담을 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라서 자진신고를 통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한 경우에 위반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개선완료보고 확인결과 동일항목 또는 새은 항목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우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의 개선완료 보고에 의하여 염물질을 채취분석한 결과 동일항목 또는 새로운 항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부과 산정기간은 동일항목일 경우 사실상 개선완료된 것이 니므로 개선 명령서상의 개선기간내에 개선할 수 있 경우에는 개선이 촉구되며 배출부과금은 개선계획서 의 개선완료 예정일부터 개선명령서상의 개선완료 지 일까지 추정되며, 개선명령서상의 개선완료 지정일 지 개선하지 못한 경우에는 1차 개선명령서상의 개선 료지정일 익일에 2차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2차 배출 과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 경우 위반회수는 1회 더 산 된다.

새로운 항목일 경우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염물질 단위로 부과되므로, 당초 위반하는 다른위반이 어 개선명령을 받게되며 오염물질 배출기간은 확인조 를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 익일부터 개선완료일까지 과되며 최초위반시의 동일분야일 경우에는 위반회수 1회 더 산입된다.

다. 자진신고자의 개선완료 확인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고한 경우

자진신고자의 기본요건은 신고자의 성실성이므로 성 성이 결여된 자진신고는 그 요건이 상실되었으므로, 신고자의 경우와 같은 위반으로 보아 개선명령을 받 되며 위반회수도 1회 더 산입된다.

I.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하이텍환경개발(주)

분	야	경	력	자	격
소	각	로	3년정도	전	문대졸 이상
대	기	오	3년정도	전	문대졸 이상
화	학	장		대	졸이상
(건류가스, 용제회수)					

1. 기계기사 1급, 전기기사 1급, 화공기사 1급, 환경기사(대기) 1급우대
2. 제출서류 : ① 자필이력서 1통
② 자기소개서 (2~3페이지)
③ 성적증명서 1통
3. 기 간 : '88.5.30일한 (1차 : 5월 10일까지)

주소/서울·마포구 공덕동 256-13
(제일빌딩 1002호, 711호)
하이텍환경개발(주) (대표·김억중)
☎ 719-3191, 719-4533

II. 경력자를 찾습니다.

1. 환경기사 수질1,2급 자격 소지자로서 활성오니 처리경력 2~3년 이상인 자.
 2. 환경기사 수질1,2급 또는 대기1,2급 자격소지 자로서 방지시설업체 근무경력이 있는자.
 3. 환경기사 소음·진동 1급 자격소지자.
- ※ 상기와 같은 사람을 찾는 문의가 있사오니 해당 자는 본연합회로 연락 바랍니다.